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교육·사회 및 문화 관계 장관 회의
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주호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교육·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사회관계장관회의는 교육·사회·문화 분야의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,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회현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음.

특히, 점차 복잡해지는 사회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현장성 높은 사회정책 심의·조정을 위해서는 더욱 긴밀하고, 체계적인 정부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바,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을 확대하여 사회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회의 구성원 확대(안 제5조제1항)

국가보훈부 장관, 해양수산부 장관,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으로 추가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계부처 협의 진행 중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교육·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

교육·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“문화체육관광부장관”을 “국가보훈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”으로, “중소벤처기업부장관”을 “해양수산부장관, 중소기업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지방시대위원회”를 “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, 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구성원 등)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	제5조(구성원 등) ① ----- -----.
1. 기획재정부장관, 교육부장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법 무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<u>문</u> <u>화체육관광부장관</u> , 농림축산 식품부장관, 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보건복지부장관, 환경부 장관, 고용노동부장관, 여성가 족부장관, <u>중소벤처기업부장</u> <u>관</u> , 국무조정실장, 방송통신위 원회 위원장,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,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통계청장	1. ----- ----- ----- <u>국</u> <u>가보훈부장관</u> , <u>문화체육관광</u> <u>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양수산부장관</u> , <u>중</u> <u>소벤처기업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62조 제1항에 따른 <u>지방시대위원회</u> 위원장 및 「저출산·고령사 회기본법 시행령」 제5조제5 항에 따른 저출산·고령사회 위원회 부위원장	3. ----- ----- ----- <u>지방시대위원회</u> <u>위원장</u> , 「 <u>국가교육위원회 설</u> <u>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</u> 」 제3 <u>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</u> <u>회</u> -----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03 - 7269